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열차 및 철도시설에서의 흉기 난동 등 위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 겸용)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425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인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 겸용)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않도록 사용 제한 요건을 설정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10제1호 중 “(고무탄은 제외한다)”를 “(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무탄을 사용하는 가스발사총의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

제8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11(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① 직무수행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를 사용하려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 제48조의5제3항 및 별표 30에 따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법 제48조의5제3항 및 별표 31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30 및 별표 3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0] <신설 2024. 00. 00.>

철도경찰 직무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기준(제85조의11제1호 관련)

장비 안전교육 기준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빈도
가스발사총	사용요건, 분사법 및 안전수칙	장비사용부서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	부서 발령시 1회, 반기 1회

철도경찰 직무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제85조의11제2호 관련)

장비 \ 안전검사 기준	검사내용	검사빈도
가스발사총	1. 구경의 임의개조 유무 2.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kg 이상인지 여부	반기 1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5조의10(직무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철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하는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5조의10(직무장비의 사용기준) ----- ----- ----- -----.
1. 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 무탄은 제외한다)의 경우: 범 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 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리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 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1미 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 <u><단서 신설></u>	1. ------(고 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 ----- ----- ----- ----- -----.
2. ~ 4. (생략) <u><신설></u>	다만, 고무탄을 사용하는 가스 발사총의 경우 상대방의 얼굴 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 2. ~ 4. (현행과 같음)
	제85조의11(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① 직무수행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를 사용 하려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는 법 제48조의5제3항 및 별표 30에 따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법 제48조의5제3항 및 별표 31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